

3. 검토의견

사하구 물품관리 조례 제8조 단서의 관서당 경비로서 물품을 구매, 수리, 제조할 시에도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요구토록 한 것은 회계 질서를 확립하도록 한 것이고

제17조의 불용 물품 매각시 장부상 취득가액을 상향조정 한 것 등은 감정 비용을 절감하도록 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199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총 괄

(단위 : m², 천원)

구 분	계			토 지			건 물		
	건수	면 적	추정금액	건수	면 적	추정금액	건수	면 적	추정금액
취 득	3	34,737	6,433,366	2	33,648	5,764,720	1	1,089	668,646
처 분	4	1,314.81	989,904	2	499	886,450	2	815.81	103,454
무상내용	18	2,071.3	.	.	.	.	18	2,071.3	.

－ 내 용

가. 취득대상 재산내역

(단위 : m², 천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 분	면 적	추 정 가 액	시 기
구 청 사 신 축 부 지 취 득	사하구 신평동 산26-3번지 일원	토 지	33,040 (9,994평)	5,000,000	4/4분기

(단위 : m², 천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 분	면 적	추 정 가 액	시 기
괴 정 2 동 사	사하구 괴정동	토 지	608 (184평)	764,720	2/4분기
신 축 취 득	331-22번지 일원	건 물	1,089 (330평)	668,646	

나. 처분대상 재산내역

(단위 : m², 천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 분	면 적	추 정 가 액	시 기
괴 정 2 동 사	사하구 괴정동	토 지	265	336,550	4/4분기
매 각	203-31번지	건 물	336.06	36,294	
괴 정 3 동 사	사하구 괴정동	토 지	234	549,900	3/4분기
매 각	437-40번지	매 각	479.75	67,160	

다. 무상사용허가 재산내역

사 업 명	소 재 지	구 조	사 용 면적(m ²)	사 용 기 간	사 용 자
구종합복지회관 무 상 사 용	감천동 12-278번지	철근콘크리트 라 멘 조	1,455	95.1.1~ 12. 31	한국아동복지회 대표 이 윤 근
구 기 동 대	당리동 317-16 (2층)	철근콘크리트 슬 래 브	49.5	〃	6339부대 3대 대장
괴 정 1 동 대	괴정동 820-3 (2층)	〃	52.8	〃	〃
괴 정 2 동 대	괴정동 203-31 (2층)	〃	42.9	〃	〃

사 업 명	소 재 지	구 조	사 용 면적(m')	사 용 기 간	사 용 자
괴 정 3 동 대	괴정동 437-40 (2층)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51.5	95.1.1~ 12. 31	6339부대 3대 대장
괴 정 4 동 대	괴정동 571-2 (2층)	〃	33	〃	〃
당 리 동 대	당리동 321-9 외 1필(3층)	〃	36.3	〃	〃
하 단 1 동 대	하단동 608-11 (2층)	〃	13.2	〃	〃
하 단 2 동 대	하단동 1161-3 (3층)	〃	36.3	〃	〃
신 평 1 동 대	신평동 544-1	〃	47.5	〃	〃
신 평 2 동 대	신평동 647-1 (2층)	〃	38.6	〃	〃
장 립 1 동 대	장림동 325-29 (2층)	〃	33	〃	〃
장 립 2 동 대	장림동 601 (2층)	〃	26.4	〃	〃
다 대 1 동 대	다대동 933-1 (2층)	〃	25	〃	〃
다 대 2 동 대	다대동 120-35 (2층)	〃	29.7	〃	〃
구 평 동 대	구평동 232 (3층)	〃	26.4	〃	〃
감 천 1 동 대	감천동 479-4 (1층)	〃	26.4	〃	〃
감 천 2 동 대	감천동 12-9 (1층)	〃	47.8	〃	〃

3. 검토의견

- 사하구 신평동 산26-3번지의 13필지 33,040㎡는 구청사 신축부지로서 현청사가 수요능력이 한계에 달하여 신청사 이전부지를 취득하여 부족한 사무실 난의 해결을 위한 것이나 총 매입비 50억원중 '95년 본예산에는 토지매입비 12억4천8백만원만 편성되어 있어 추경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고
- 괴정동 331-22번지의 2필지 토지 608㎡와 신축건물 1,089㎡는 괴정2동사 신축 건으로서 노후되고 협소한 현재의 괴정2동사를 이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현재 사용중인 괴정2, 3동사 및 부지매각은 '95년도 중에 괴정2, 3동사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현동사를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불용재산으로 처리코자 하는 것임.
- 감천동 12-278번지상의 구 종합복지관 무상 사용허가 건물은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아동 복지회에 무상 사용토록 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무료진료, 탁아실, 독서실, 공동작업장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임
- 구·동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 무상사용 17개소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등을 예비군 중대가 무상 사용토록 하여 줌으로써 지역예비군을 지원 육성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원활과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됨.